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개정

調 査 部

1. 사 유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영업허가의 제한) 제 4 호(공익상 또는 식품첨가물의 수급조절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고시 제82-46호, '82.7.27)을 개정하여 허가제한 대상업종의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므로서 허가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보건사회부고시 제82-25, '82.5.22)으로서 동 업종을 합병한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존음료수의 경우 주한외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품질향상을 기함.

보건사회부고시 제84-38호(1984. 5. 28)

보건사회부고시 제82-46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8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제 1 조(허가기준 적용업종)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

제 4 호의 적용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과자류 제조업(떡류는 제외한다)
2. 어육연제품 제조업
3. 다류 제조업
4. 장류 제조업
5. 두부류 제조업
6. 보존음료수 제조업

제 2 조(적용제외대상) 제 1 조 각호의 적용대상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사회부 고시 제82-25호('82.5.22)에 의거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으로서 당해 영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 1 조 제 1 호, 제 2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자체실험검사실을 설치하는 경우.
2. 두부류 제조업으로서 1종식품 위생관리인을 두고 시설이 마쇄과정으로부터 응고과정까지 자동기계화 되어 있고, 두부 침수용 냉장수(3°C~5°C) 제조시설, 두부보관용 냉장시설 및 운반상자 증기소독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다만, 도서지역으로써 도지사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다류제조업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 1) 작업장의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장, 포장실 및 실험실은 콘크리트내벽으로 별도 구획되어 바닥으로부터 1.5m까지는 밝은색 계통의 타

- 일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작업장의 출입구, 원료처리장, 제조가공장, 포장실 및 실험실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각각 수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 씻는 시설(60cm×50cm 이상)을 갖추어 항상 사용할 수 있고, 사용후 비려지는 물은 방취시설이 된 배관을 통하여 하수도로 빠져 나가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3) 제조가공장에는 원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자동배합기를 갖추어야 하며 포장실에는 생산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자동포장기를 갖추어야 한다.
 - 4) 변소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서 바닥과 내벽의 1.5m까지는 타일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 씻는 시설(60cm×50cm 이상)을 갖추어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5) 경의실에서는 종업원 개개인의 의복과 휴대품을 둘 수 있는 위생적인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1인 이상의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1) 1급위생사, 1급위생시험사, 1급식품제조가공기사
 - (2) 대학에서 약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 외국에서 (1)~(2)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7) 실험실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 식품·원료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소분업, 집유업, 유처리업을 포함한다)의 시설기준 다. 검사시설에서 정하는 기준의에 다음의 실험기계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교형 및 액상다류의 경우 : 스펙트로포토메타

나) 액상다류의 경우

- (1) 균질기
- (2) 오토크레이브
- (3) 배양기
- (4) 무균작업상
- (5) 세균수 계산기
- (6) 현미경

4. 제 1 조 제 6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1. 이 고시 시행이전에 접수된 다류 제조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2. 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존음료수 제조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고시 제 2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락질서 의식속에 건전한 여가생활